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장 고발 거부·기피 시 고발 요건 완화〉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69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상범 · 박충권 · 김석기 · 구자근 · 권영세 · 송석준
엄태영 · 임종득 · 곽규택 · 임이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 의안번호 : 1486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

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 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② (생략)	제15조(고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③ ----- ----- ----- ----- ----- ----- -----3분의 1 이상-----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3항1)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 등에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고발하는 경우 본회의는 국회의장 명의로,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함.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없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 명의를 아닌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음.

한편, 2025. 10.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²⁾³⁾

개정안은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 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원회의 고발 의결이 이루어진 후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 정족수 요건을 현행과 같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할지, 개정안과 같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수의견의 반영가능성을 제고할지는, 국회운영의 원리와 신중하고 균형있는 고발권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

2) 해당 내용은 본회의 수정안을 통하여 추가된 내용임. 본회의 수정안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에서는 “위원장이 고발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발 의사가 없는 경우, 위증 등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3)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하였음에도 위원장이 그 명의로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로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이 속한 교섭단체와 위원장이 속한 교섭단체가 다른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